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한울권 방사능방재 업무 전담을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과 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정원 1명(5급)을 상호이체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22호의3부터 제22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6조제4항제10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지역사무소장)”을 “(고리원전·새울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지역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하며”를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9”를 “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18”을 “1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① · ② (생략)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22의2. (생략)	1. ~ 22의2. (현행과 같음)
<u>22의3. 안전관리 ·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운영</u>	<u><삭 제></u>
<u>22의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u>	<u><삭 제></u>
<u>22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u><삭 제></u>
22의6. (생략)	22의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3.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u>
<u>23. (생략)</u>	<u>24. (현행 제23호와 같음)</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정책국) ① ~ ③ (생략)	제6조(안전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의4. (생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10의5.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

11. (생략)

⑤ (생략)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⑦ (생략)

제7조의3(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

<삭제>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고리원전·새울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대전지역사무소장) -----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신 · 구 정원 대비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9	40	+1
일반직 계	39	40	+1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18	19	+1
·	·	·	
·	·	·	